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단557272, 2019가단525982(반소) 판결 [자동차인도 등
청구의 소, 매매대금반환(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덕, 정△화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훈, 이♣미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제1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3,740원 및 그 중 309,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1.부터 182,640원에 대하여는 2018. 9. 9.부터, 12,1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경 C으로부터 "네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주면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마친 후 원고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 3,000만 원을 받아 C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2017. 10. 28.경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1,4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C에게 전화한 피고가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문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위 자동차를 1,2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는 1,200만 원을 C이 지정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C은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할부대출금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매대금 1,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굴삭기를 대신 매도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굴삭기를 인도받아 편취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2431, 2018고단17(병합)].

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과태료, 미납 통행료가 부과되었다.

- ① 2018. 7. 11.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09,000원
- ② 2017. 11. 11.자 주정차위반과태료 42,640원
- ③ 2018. 7. 6.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00원
- ④ 2018. 9. 9.자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00,000원
- ⑤ 2017. 12. 20.자 미납통행료 1,100원
- ⑥ 2018. 6. 29.자 미납통행료 1,700원
- ⑦ 2018. 10. 4.자 미납통행료 7,200원
- ⑧ 2018. 10. 16.,자 미납통행료 2,100원

마.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권리자인 C의 처분행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 점유하여 운행하는

동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 미납통행료 등 503,740원이 부과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503,7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권한을 수여하였거나,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C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으로써 이행지체를 이유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부담한 차량 탁송비, 차량 부품 교환비, 차량 보관비 반환 채권으로 원고가 구하는 과태료 등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원고에게 계약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는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최소 1,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표현대리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원고에게 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C의 대리권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는 D 사이트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보고 C와 통화하여 차량상태, 압류여부를 문의한 후 원고

명의를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탁송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0. 29., 경 중고차조합에서 제공하는 전산망 검색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에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C와 통화하여 압류해지 후 매도용 인감 등 서류를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매매계약 당시 본인 여부 또는 대리권 여부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제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

라) D 사이트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자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실명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본인 여부,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매계약에서 필수적인 절차이고, 피고는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2) C의 표현대리 인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원고 명의의 자동차, 계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C에게 자동차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 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바가 없고, C에게 원고의 위임장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의 교부를 요청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무권리자인 C의 처분행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 점유하는 동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 등 503,740원이 부과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50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출한 탁송비, 부품비, 보관비 등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23.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572,000원의 정비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탁송비 및 주차장 사용비 부분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72,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위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권 금액이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C에게 원고의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이 굴삭기를 매도해준다고 하여 자신의 계좌와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였고, C이 전적으로 위 계좌와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C으로부터 굴삭기와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편취당하여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를 교부할 당시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H에게 600만 원, C에게 500만 원이 송금되고 현금으로 1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C이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H에 대한 송금과 현금 인출 모두 C이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위 1,2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 I

2. 제원관리번호 : 008-2-00026-0002-1309

3. 차명 : E300

4. 차종 : 승용 대형

5. 차대번호 : J

6. 원동기 형식 : 272 952

7. 최초등록일 : 2009. 9. 30.

8. 최종소유자 : A

9. 사용본거지 : 전주시 완산군 K, 4층 L호. 끝.